

의안번호	제 594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 
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이옥규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0년 11월 20일

#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이옥규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94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0년 11월 20일

발 의 자 : 이옥규, 임영은, 박상돈,  
심기보, 오영탁, 육미선,  
송미애

## 1. 개정이유

- 「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58조(과태료) 같은 법 제41조제4항 또는 같은 법 제51조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 또는 시·도지사가 부과 징수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.

## 2. 주요내용

- 과태료의 부과기준(안 제43조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

나. 관련부서 협의 :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산업과와 협의함.

다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라. 입법예고 : 2020. 11. 13. ~ 2020. 11. 18.

##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3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「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5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#### **과태료의 부과기준**(제43조 관련)

##### 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에 같은 위반행위로 다시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.

나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- 1) 위반행위자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2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횟수,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다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.

- 1)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
- 2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횟수,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## 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법 제51조를 위반하여 보유자, 보유단체, 명예보유자, 전수교육조교 및 이수자가 아닌 자가 보유자, 보유단체, 명예보유자, 전수교육조교 및 이수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	법 제58조제1항 제2호	200	400	600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43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「무형문 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5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.

## 관련법령 발취

### □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

**제41조(무형문화재 전승공예품 인증)** ① 문화재청장은 인증심사를 거쳐 전승공예품에 대하여 인증(이하 "인증"이라 한다)을 할 수 있다.

② 문화재청장은 인증을 위하여 해당 전승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전승공예품 제작공정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.

③ 인증을 받은 해당 전승자는 자신이 제작한 전승공예품에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.

④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상품에 문화재청장이 정한 인증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⑤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, 재심사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⑥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, 표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**제51조(유사명칭 사용의 금지)** 이 법에 따른 보유자, 보유단체, 명예보유자, 전수교육조교 및 이수자가 아닌 자는 보유자, 보유단체, 명예보유자, 전수교육조교, 이수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

**제58조(과태료)**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제41조제4항을 위반한 자
2. 제51조를 위반한 자
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 또는 시·도지사가 부과·징수한다.

## □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37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5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
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2] <개정 2019. 10. 8.>

### 과태료의 부과기준(제37조 관련)

#### 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에 같은 위반행위로 다시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.

나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- 1) 위반행위자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2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3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4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횟수,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다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. 다만,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
- 1)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
- 2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횟수,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#### 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가. 법 제41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않은 상품에 문화재청장이 정한 인증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	법 제58조제1항 제1호	300	450	600
나. 법 제51조를 위반하여 보유자, 보유단체, 명예보유자, 전수교육조교 및	법 제58조제1항	400	600	800

이수자가 아닌 자가 보유자, 보유단체, 명예보유자, 전수교육조교 및 이수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	제2호			
--	-----	--	--	--

##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### 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(비용추계서 작성대상)제4항 제1호

### ○ 사 유

-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.